

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54 호
----------	--------

제 출 일 자	2004. 11. 15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동절기 근무 1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준수와 민간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무원이 솔선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,
- 공무원은 일과 중 민원처리 전화응대 등으로 업무집중이 잘 되지 않아 민원이 내왕하지 않는 시간대에 각종업무의 기획과 점검 및 연찬을 통하여 자기발전 업무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,
- 우리시의 경우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표준정원보다 많은 인력운영으로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므로 부족인력의 해소를 위해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,
-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204곳(82%)이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46곳 중 22곳이 11월중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실정이며,
- 정부의 방침도 조례개정을 11월말까지 마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,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 특별교부세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배제 등 행·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바 정부의 방침대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동절기(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) 근무시간을 조정함.

○ 퇴근시간 : 오후 5시 ⇒ 오후 6시

4. 주요토의과제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 결과(2004. 10. 18 ~ 2004. 10. 25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3) 자치단체별 동절기 공무원 퇴근시간 현황 : 따로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<p>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,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관 계 법 령 발 취

지방공무원법

第59條 (委任規定) 公務員의 服務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※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(2004. 8. 11일자)

第59條 (委任規定) 公務員의 服務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국가공무원복무규정

제9조 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

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4.6.24]

자치단체별 동절기 공무원 퇴근시간 현황

시·도	자치 단체수	퇴근시간		개정추진 (오후6시)	비고
		오후 6시	오후 5시		
계	250	204	46	22	
서울	26	26	-	-	
부산	17	15	2	2	
대구	9	9	-	-	
인천	11	3	8	-	
광주	6	6	-	-	
대전	6	6	-	-	
울산	6	4	2	1	
경기	32	32	-	-	
강원	19	17	2	1	
충북	13	6	7	6	
충남	17	17	-	-	
전북	15	14	1	-	
전남	23	16	7	2	
경북	24	19	5	2	
경남	21	9	12	8	
제주	5	5	-	-	

※ 국가공무원 동절기 퇴근시간 : 오후 6시